

발 간 사

인문학의 위기, 사회과학의 위기가 이 사회의 화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학문 자체의 위기상황입니다. 특히 실무중심의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 탓으로 법학의 학문적 도대는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법사학회에서는 학문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1973년 3월 “한국법사학회”를 창립하고 이듬해 학회지 『법사학연구』를 창간하였습니다. 법을 규범의 해석을 넘어서서 법이 작동하는 현실과 그 의미를 ‘역사’의 측면에서 탐구하는 법사학연구자들의 학문적 결실인 『법사학연구』 제59호를 세상에 보냅니다.

『법사학연구』 제59호에는 모두 7편의 논문과 강연원고 1편을 수록하였습니다. 8편 모두 하나하나 주옥같은 글임을 자부합니다.

1635년 결송입안을 통해 조선시대 소송절차의 세부적인 면을 밝힌 논문은 법학적 접근으로 역사학계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에 대한 법사학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선후기에서 조선총독부까지 개괄적으로 소개한 논문은 향후 연구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회는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院法에 대한 연구는 국회법의 성립사의 연구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법제사의 기본은 당률과 대명률입니다. 두 법전의 체제를 비교한 논문은 연구시야를 넓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명률에 있는 입법기술적인 용어인 ‘准’에 대한 연구는 법학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세밀한 법사학연구의 모범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로마법 개소의 번역과 법적 의미를 논구한 논문은 세계 각국의 11종의 번

역을 검토한 결과 오류임을 규명하고 전체 문맥과 로마법상의 관련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번역을 제시한 점에서 세계학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성과입니다. 우리 민법의 고유제도인 총유에 대한 연혁적 연구는 공동체의 형성이 요청되는 현 상황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원고는 비록 20년 전의 것이지만, 그 문제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논문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단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방하는 것도 획일화된 현재에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지면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호 역시 다양성이 결여된 점은 편집위원장으로 부끄럽게 여기며, 다음호에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지난 호에서 약속을 드린 훌륭한 연구성과에 대한 서평이 없어서 더욱 이웁습니다.

옥고를 투고하신 회원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엄격하고 성실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실무를 맡은 간사와 민속원 담당자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법사학연구』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풍성하고 알찬 학술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과 독자들의 애정이 깃든 따뜻한 질책을 바랍니다.

2018. 4. 30.

『법사학연구』 편집위원장